

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분리, 친권제한 등 강제력 수반에 따라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어, 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올해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,
- 특히, 우리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선도지역으로 올해 연말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·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근거 마련(안 제22조)
-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의2)
- 학대피해아동(학대자 포함)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, 상담, 교육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(안 제24조제1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아동복지법 제22조, 제22조의4, 제45조, 제46조, 제46조의2
-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예고기간 : 2020. 7. 6.(월) ~ 7. 27.(월)(22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붙임5

방침결정문 : 붙임6

「불임 1 조례개정안」

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” 을 “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”로 한다.

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, 제22조를 제24조로 하며,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)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,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(종전의 제22조)의 제목 “(설치 및 운영)” 을 “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등에 관한 특례) 시장

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,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여성가족과장 박 현 정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아동친화팀장 조 유 미
	담당자 성명 · 전화	고명석 (행정 2319)

[붙임2 신·구조문대비표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장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</u> <u><신 설></u>	<u>제4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</u> <u>제2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) ①</u> <u>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</u> <u>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</u> <u>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</u> <u>제22조의2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,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
<u>제22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(생 략)</u>	<u>제2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(현행과 같음)</u>

제23조(업무)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
2.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·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
3. 아동학대행위자·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
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6.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
7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
8.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
9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24조 ~ 제26조 (생략)

<삭 제>

제25조 ~ 제27조 (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)

안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25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8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공적인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변동된 업무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여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23조)
- 아동보호기관의 업무 별도 신설(안 제24조)

안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를 안 제23조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업무)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2. 아동학대예방 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4.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4장 <u>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</u> <u><신 설></u>	<u>제4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</u> <u>제2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)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</u> <u>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</u> <u>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</u>	제4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제2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 2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, 법 제22조의 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의 2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)(개정안과 같음)

<p><u>제22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(생략)</u></p>	<p><u>제2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	<p><u>제23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(안 제24조제2항의 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<u>제23조(업무)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</u> <u>2.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·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</u> <u>3. 아동학대행위자·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</u> <u>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</u> <u>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</u> <u>6.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</u> <u>7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</u> <u>8.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</u> <u>9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 	<p><u><삭 제></u></p>	<p><u>제24조(업무)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</u> <u>2. 아동학대예방 연구, 교육 및 홍보</u> <u>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</u> <u>4.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</u> <u>5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

<u>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		
<u>제24조 ~ 제26조 (생략)</u>	<u>제25조 ~ 제27조 (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)</u>	제25조~제27조 (개정안과 같음)